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-86호

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-92호)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사유

코로나-19와 대내·외 경제 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시명칭 변경

-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필요에 따라 명칭 변경

* (기존) **코로나-19 대응을 위한**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→ (변경) **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**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

나. 기존지침 연장(제5조, 제6조)

- ’20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시행한 기존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,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, 피해기업 기술료 감면 등을 ‘23년 신규 선정과제에 동일하게 적용(과제 종료 시까지)

다. 정부지원 비율 조정(제4조)

- 총 연구비의 최대 90%에서 최대 80%로 일괄 적용

라. 체계 정비(제2조, 제4조, 제5조)

- 특별지침 내 반영된 관리지침(전문기관 규정)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중기부 고시)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기부 고시)」 등 행정규칙으로 변경

마. 적용 기준(부칙 제2조)

- ’23년에 신규 선정 과제 종료시까지 적용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0일

4. 의견제출

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・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2. 13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기술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unmo@korea.kr

2) 주소 : (우 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

3) 팩스 : 044-204-777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(전화 : 044-204-776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-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

제정 2020. 4. 17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
개정 2020. 12. 21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104호
개정 2021. 12. 28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92호
개정 2023. 0. 00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00호

제1조(목적) 이 특별지침은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48조에 따라 코로나-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(이하 "운영요령"이라 한다) 제2조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, 이하 "기술료규정"이라 한다)을 준용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%까지 할 수 있다.

② 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,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

상으로 할 수 있다.

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92호, 2021.12.28. 시행)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

④ 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(이하 “계속과제”라 한다)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.(단,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.)

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“혁신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인건비 현금계상)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

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(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)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,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(혁신법 제33조제1항의 "제재처분평가단"을 포함한다)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,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재검토 기한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) 제4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(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4년말까지 할 수 있다.

제4조(계속과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시 또는 협약 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, 제2020-104호, 제2021-92호)을 따른다.